



## 22 총회산하기관정관개정연구위원회 보고

제102회기 총회산하기관정관개정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보고인 : 위원장 조재일  
서 기 임재호

### 1. 조 직

- 위원장 : 조재일    • 서 기 : 임재호    • 회 계 : 송병원    • 총 무 : 이희중
- 부회계 : 한상봉

### 2. 회 의

#### 1) 전체회의

##### (1) 제1차 회의

☞ 일 시 : 2018. 1. 22(월) 11:00

☞ 장 소 : 총회회의실

##### ☞ 결의사항

- ① 위원회 조직의 건은 위원장 조재일 목사, 서기 임재호 목사, 총무 이희중 목사, 회계 송병원 장로, 부회계 한상봉 장로로 조직하다.
- ② 제102회 총회에 현의한 4개 노회(남전주노회, 목포서노회, 함동노회, 황동노회)에 총회산하기관정관 개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의도, 정관 개정(안)을 2월 14일(수)까지 제출 요청키로 하다.
- ③ 정관 개정 연구를 위해 총회산하 기관에 정관(총신대(법인정관)•운영규정), 기독교신문, 총회유지재단, 총회은급재단, 총회세계선교회, 총회복지재단, 교회자립개발원)을 2월 14일(수)까지 제출 통보키로 하다.
- ④ 차기회의는 2월 22일(목)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소집키로 하다.

##### (2) 제2차 회의

☞ 일 시 : 2018. 2. 22(목) 11:00

☞ 장 소 : 총회회의실

##### ☞ 결의사항

- ① 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 관련 현의노회 취지 검토 건은 현의노회(목포서노회) 소속 이형만 목사가 참석하여 취지와 참고내용을 말하니 청취하다.
- ② 총회산하기관 중 정관을 제출하지 않은 총회신학원 재단이사회(정관)와, 운영이사회(운영규정)에 제출할 것을 재요청하기로 하다.
- ③ 제출된 기관 정관을 검토하니,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정할 것을 연구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하다.
- ④ 차기회의는 3월30일(금), 오전10시30분에 모이기로 하다.

### (3) 제3차 회의

☞ 일 시 : 2018. 3. 29(목) 11:00

☞ 장 소 : 총회회의실

#### ☞ 결의사항

- ① 기독교신문사, 유지재단, 은급재단, 세계선교회, 복지재단, 교회자립개발원 정관을 검토하다.
  - ㉠ 기독교신문사 정관을 검토하니 정관개정에 관련된 조항이 없음으로 관련조항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정관(개정)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 후 확정, 발효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을 확인하다.
  - ㉡ 유지재단 정관을 검토하니 제6장 제29조 '이사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(합동측)에서 승인을 얻은 후'로 되어있음을 확인하다.
  - ㉢ 은급재단 정관을 검토하니 제6장 제32조 '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'로 되어있기에 대한예수교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수정이 필요함을 확인하다.
  - ㉣ 세계선교회 정관을 검토하니 제10장 22절(부칙) 2항에 '본 정관은 교단총회 인준 즉시 시행한다'로 되어있음을 확인하다.
  - ㉤ 복지재단 정관을 검토하니 제7장 제35조 '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'라고 되어있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관개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수정이 필요함을 확인하다.
  - ㉥ 교회자립개발원 정관을 검토하니 제10장 제29조 '결정된 개정안은 본 교단 총회에 상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결의로 확정된다'라고 되어있음을 확인하다.
- ② 총회산하기관 중 정관을 제출하지 않은 총회 신학원 재단이사회(정관)와, 운영이사회(운영규정)에 제출할 것을 위원장에게 맡겨 재요청하기로 하다.

### (4) 제4차 회의

☞ 일 시 : 2018. 4. 26(목) 11:00

☞ 장 소 : 총회회의실

#### ☞ 결의사항

- ① 총회신학원(총신대학교) 재단이사회 정관을 검토하니
  - ㉠ 총신대학교를 총회 직할로 명시
  - ㉡ 이사 임기 제한
  - ㉢ 이사회비 상향(이사의무)
  - ㉣ 재단이사과 운영이사의 일원화 등 관련 정관이 개정되어야 함을 논의하다.
- ② 금일 위원회로 제출된 총회신학원(총신대학교) 운영이사회 운영규칙을 검토하다.
- ③ 정관을 미 제출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정관을 재요청 하도록 하다.

### (5) 제5차 회의

☞ 일 시 : 2018. 7. 16(월) 11:00

☞ 장 소 : 총회회의실

#### ☞ 결의사항



- ① 교단 산하에 운영되는 장신대, 고신대 정관을 검토하고, 총신대학교 정관과 상이점을 발견하다.
- ②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선임 방법과 정관 개정안을 논의하다.
- ③ 서기에게 맡겨 각 신학대 정관 비교하여 작성토록 하고, 차기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.
- ④ 제103회 총회 보고 시 정관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회기 연장하여 '총회산하기관정관개정위원회'로 활동 청원하기로 하다.
- ⑤ 차기회의는 7월26일(목) 11시에 총회회의실에서 개최기로 하다.

#### (6) 제6차 회의

☞ 일 시 : 2018. 7. 26(목) 11:00

☞ 장 소 : 총회회의실

#### ☞ 결의사항

- ① 각 신학대학교(총신대, 장신대, 고신대)정관을 비교하니 총신대 정관은 타 신학대학 정관에 비하여 사유화 위험성이 있음을 확인하다.
- ②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차기 회의 때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총회 보고하기로 하다.
- ③ 차기회의는 8월 2일(목) 오전11시 총회 회의실에서 회집하기로 하다.

## ‘총회산하 기관 정관개정연구위원회’의 최종 보고서

### 1. 102회 총회 수입사항

- 1) 남전주 노회(노회장 함현진)외 3개 노회가 현의한 ‘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시행의 건’은 ‘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연구위원회’ 5인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하기로 가결하다.
- 2) 취지는 총회산하 각기관들이 (교단)총회 파회 후 임의로 정관을 개정함으로 총회와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 될 여지가 있음으로 반드시 (교단)총회의 결의(인준)로 각 기관의 정관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총회산하 각 기관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

### 2. 최종보고서의 결론

- 1) 총회 산하 7기관중 총회의 결의나 추인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기독교신문사, 대한예수교장로회(합동측)은급재단, 복지재단, 총신대학교 정관은 총회의 결의나 추인 후에 정관을 개정(발효)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에 의거 관련 정관을 개정(제정) 해야 하며,
- 2) 특히 총신대학교는 아래 비교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관상 총회직영 신학교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며 사유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정관이 반드시 개정되어야함을 보고합니다.

- 아 래 -

#### 각 신학대 법인정관 비교표

\* 총신대 정관은 재단이사회에서 제출하지 않아 102회 총회의 보고서에 보고된 정관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, 정관변경 의욕이 있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했고 타 대학정관은 공개된 정관을 참조했음.

	학교	총신대	장신대	고신대
1	(목적)교단총회 직할유무	X (1장 1조)	O (1장 1조)	O (1장 1조)
2	(정관변경)교단총회 인준 유무	X (1장 5조)	O (시행세칙 3조)	O (1장 5조)
3	(재산의 변동)교단총회 인준유무	X (2장 7조)	O (시행세칙 4조)	O (2장 7조)
4	(이사자격) 총회소속 유무	X (3장 20조)	O (3장 24조, 시행세칙 5조)	O (3장 20조)
5	(이사선임방법)총회추천(인준)유무	X (3장 20조)	O (시행세칙 5조)	O (3장 20조)
6	임원의 임기(나이) 제한 여부	X (3장 19조)	언급 없지만 교단추천(결의)이기 때문에 정년 이내에서 추천할 것 사료	언급 없지만 교단추천(결의)이기 때문에 정년 이내에서 추천할 것 사료



7	(이사)학교발전기금 출연유무	X (5장 36조)	O (시행세칙 5조)	X
8	법인해산 총회인준(협의) 유무	X (5장 36조)	O (5장 40조)	O (5장 33조)
9	교원의 직위해제(형사기소자)	X (6장 45조)	O (6장 48조)	O (6장 36조)
10	총장임면권	이사회결의결 통해 이사장이(6장 39조)	총회인준 통해 이사회결의결 이사장이(세칙7 조)	이사회 의결를 통해 이사장이(6장 36조)

3) 아울러 본 위원회는 충신대학교 정관 뿐 아니라, 법인이사회와 운영이사회로 이원구조로 되어 있는 양 이사회를 통합하여 사립학교법에서 인정하는 법인이사회를 구성하되 이사의 수를 대폭 증원하여 학교와 총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

### 3. 청 원

끝으로 ‘총회산하 기관 정관개정연구위원회’를 ‘총회산하 기관 정관개정위원회’로 명칭을 변경하여 한회기 연장하여 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청 원 서

수신 : 총회장

참조 : 서기 및 재정부장

제목 : 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위원회 설치 청원

아래와 같이 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위원회 설치를 청원하오니 허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청원사항: 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위원회 설치 청원의 건
2. 청원취지: 102회 총회의 수임을 받아 총회산하 7개 기관을 정관을 검토 연구한 결과 '정관개정위원회'를 설치하여 각 기관의 정관을 총회의 정체성과 발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정관의 제정,개정을 확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
2018년 9월

총회산하기관정관개정연구위원회

위원장 조재일

서기 임재호